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,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일반 지원시설의 업무 중 수사기관의 조사에의 동행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의 동행을 추가함(안 제11조).

II. 검토의견

- 법률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윤 상 열)